

대 법 원

제 3 부

결 정

등 본 입 니 다

200 2006. 12 월 일

대법원 재판사무제2과

법원사무관 송 환



사 건 2006모523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
재 항 고 인 김명호

서울 동작

피 의 자 1. 이용훈

2. 이광범

원 심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06. 9. 11.자 2006초기317 결정

주 문

재항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재항고이유를 본다.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,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.

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06. 11. 29.

재판장

대법관

이흥훈



주심

대법관

김영란



대법관

김황식



대법관

안대희

